

코스닥시장 기술평가제도 전면 개편

- 한국거래소 -

1.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주요 개정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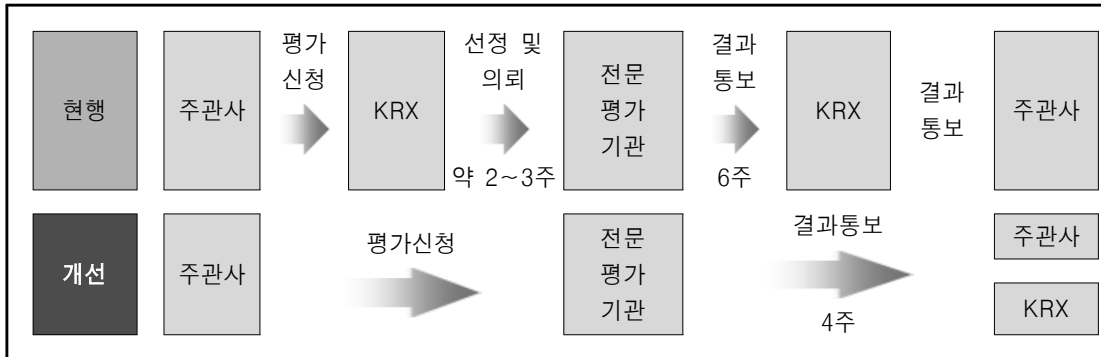
① 평가기관간 편차 해소를 통한 기술평가 신뢰성 제고

- 기존 22개 평가기관에서 TCB(기술신용평가기관) 3사*로 전환됨으로써 평가기관간 편차가 해소되고,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측면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 TCB 3사는 최근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위한 별도의 표준화된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품질의 균일성이 유지될 전망

②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 구축

- 거래소를 경유하지 않고 기업이 주관사를 통해 전문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술평가 접근성이 용이해짐

【기술평가 절차 개선】



③ 평가수수료 및 평가기간 등 평가부담 대폭 완화

- (평가수수료 인하) 기존 전문평가기관 수수료 대비 평가수수료가 현행 건당 15백만원에서 '건당 5백만원'으로 1/3 수준으로 인하
- (평가기간 단축) 자율적 평가시스템 도입과 기술평가 프로세스 개선으로 평가기간이 현행 약 9주에서 '4주 이내'로 5주 단축

④ 평가항목 정비

- 기존 평가항목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고, 기존에 없던 경영진에 관한 평가항목*을 신설
 - *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사업몰입도, 최고기술경영자의 전문성, 기술인력의 전문성 등

▶ 기술기업 특례상장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유망기술기업의 상장활성화를 촉진하고 모험자본의 회수-재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 (참고) 전문평가항목 개정 내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개정전	개정후
기술성	기술의 완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신뢰성 •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안정된 인프라의 존재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완성도 • 기술의 자립도 및 확장성 • 기술의 모방 난이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 보유 유무 및 보유기술 경쟁 우위도 • 지적재산권 소유 유무 • 기술의 수명주기 및 제품응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기술의 차별성 • 주력기술제품의 수명 •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 실적 • 지식재산보유현황

기술성	기술인력의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인력의 확보 정도와 그 충분성 • 기술인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 • 연구개발 투자비중, 규모 및 적정성 • 기술경영 경험수준 • 기술경영 지식수준 • 기술경영 관리능력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 • 주요 경영진의 사업 몰입도 • 최고기술경영자의 전문성 • 기술인력의 전문성 </div>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의 제품화 비용우위 정도 (기술상용화를 위한 생산시설 및 생산요소 유무) • 기술제품의 표준화 정도 • 기술제품의 상용화 정도 • 기술상용화를 위한 생산요소요구 수준 • 기술제품의 모방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제품의 생산역량 • 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한 자본조달능력 • 기술제품 판매처의 다양성 • 기술제품 판매처의 안정성 • 기술제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시장성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기술제품 시장의 시장규모 등 • 주력기술제품 시장의 성장률 대체시장 존재 여부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 주력 기술제품 시장의 성장성 • 주력 기술제품의 시장구조 및 특성
	기술제품의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기술제품의 시장점유율 • 경쟁자에 관한 사항 및 경쟁우위도, 진입장벽의 고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제품의 시장지위 • 경쟁제품 대비 비교우위성

2. 기술성장기업 상장 현황

□ '05년 기술기업 상장특례제도 시행 이후 기술평가를 통과하여 상장한 기업은 총 15사로 최근 상장한 아스트(항공기 부품) 이외는 모두 바이오 업종임

【기술성장기업 상장현황】

상장일	회사명	주요제품
'05.12.29	바이로메드	유전자 치료제
'05.12.29	바이오니아	합성유전자
'06. 1. 6	크리스탈	당뇨치료제 등
'09. 2. 3	이수애플리스	항체치료제
'09. 9.15	제넥신	항체융합단백질치료제

'09.11. 6	진매트릭스	간염내성진단
'11. 1.26	인트론바이오	유전자시약
'11. 7.13	나이백	펩타이드 의약품
'11.12.26	디엔에이링크	유전자분석
'13. 3. 5	코렌텍	인공고관절
'13. 5.10	레고캠바이오	항생제
'13. 9.12	아미코젠	특수효과
'13.12.19	인트로메딕	캡슐내시경
'14.12.12	알테오젠	바이오시밀러 등
'14.12.24	아스트	항공기동체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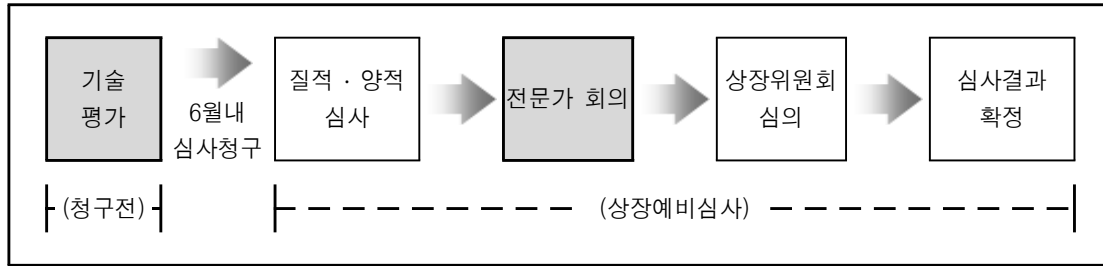
3.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

- ① (제도 의의)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하여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 ② (특례대상기업)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으로부터의 기술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이 부여
* 복수기관 평가결과 A등급 & BBB등급 이상
- ③ (상장심사)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기업은 일반벤처기업 대비 일부 외형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됨

- ◆ 요건 면제 : ① 설립후 경과연수(3년 이상)
② 경영성과(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③ 이익규모 등(ROE, 당기순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등)
- ◆ 요건 완화 : ① 기업규모(자기자본 10억원 이상)
② 자본상태(자본잠식을 10% 미만)

- 질적심사에 있어서도 기술성·시장성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및 전문가집단의 자문결과를 반영함으로써,
- 현재의 경영성과보다는 보유기술을 통한 향후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장적격성 여부를 검토함

【기술성장기업 상장예비심사 절차】



④ (상장후 관리제도)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보호 문제 차단을 위해 다양한 상장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 (별도 소속부) 기술성장기업의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시장관리를 위해 별도 소속부(기술성장기업부)로 관리
- (보호예수기간 확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등의 상장후 보호예수기간을 6개월 → 1년으로 확대

⑤ (퇴출제도) 상장 초기 일반기업 대비 미흡한 영업실적 특성을 고려하여 퇴출기준을 완화

- (관리종목 적용유예) ①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 ②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 신규상장 후 3년간 적용 유예
- (관리종목 미적용)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 적용 면제

※ (참고)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연혁

- ('05. 3월) 기술평가를 통한 상장특례제도 도입
- 적자인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해 전문평가기관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경우 상장요건 중 경상이익 및 ROE요건 적용 면제
- ('06. 2월)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시 복수기관 평가 의무화
- ('11. 3월) 기술평가 특례대상 확대
- 바이오 업종 → 신성장동력 17개 업종
- ('13. 4월) 기술평가 특례대상 확대
- 신성장동력 17개 업종 → 전 업종 (중소기업 지원배제 업종 제외)
- ('13. 8월) 전문평가기관 확대
- 9개 전문평가기관 → 22개 전문평가기관
- ('14. 7월) 진입기준 및 상장유지부담 완화
- 업종제한 전면폐지 및 상장요건 중 자기자본요건 완화(15억→10억), 자본상태요건 완화(자본잠식 없을 것→ 자본잠식을 10%미만)

코스닥시장 기술기업 상장특례 제도 Q&A

Q1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기술력이 뛰어나고 적자상태인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나요?

《답변》

코스닥시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05년부터 기술기업 상장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기업이더라도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이면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중소기업도 동제도를 활용해 특례상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Q2

이번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문평가기관이 기존의 22개 기관에서 TCB* (기술신용평가기관) 3사로 변경되었고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약 5주 단축되었고 평가수수료도 기존의 1/3 수준으로 인하하여 기업의 상장비용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특례대상 범위가 기존 벤처기업에서 일반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TCB(Technology Credit Bureau)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14.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업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기존에 은행 여신용 기술평가만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상장특례용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Q3

바이오 기업이 아닌데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코스닥시장은 '05년 바이오기업에 대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특례대상 업종을 확대하여 '14.7월 업종제한을 전면폐지 하였으므로, 현재 모든 업종의 유망기술기업이 특례상장 가능합니다.

Q4 기술특례 상장요건이 일반 또는 벤처요건보다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단, 외형요건에 있어 일부 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 (요건 면제) ① 설립후 경과연수(3년 이상)
 - ② 경영성과(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 ③ 이익규모 등(ROE, 당기순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등)
- (요건 완화) ① 기업규모(자기자본 10억원 이상)
 - ② 자본상태(자본잠식률 10% 미만)

질적심사에 있어서도 현재의 경영성과보다는 보유기술을 통한 향후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Q5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무조건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될 수 있나요?

《답변》

기술평가는 거래소에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사전절차이며 이를 통과하더라도 별도로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기술평가를 통과한 기업이 무조건 코스닥시장에 특례상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평가는 기술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심사청구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내부심사, 전문가회의, 상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장여부가 결정됩니다.

Q6 상장특례를 위한 기술평가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상장특례를 위한 기술평가는 반드시 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라고 하더라도 거래소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등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7 기술기업 특례로 상장된 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현재까지 15개사가 상장되었으며, 상장폐지된 기업은 없습니다.

Q8	기술기업 특례상장을 위해 기술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

주관사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 중 2곳을 선정하여 기술평가를 직접 의뢰해야 합니다.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Q9	TCB 3사 모두에게서 기술평가를 받아서 평가결과가 좋은 2곳의 결과를 제출해도 되나요?
----	---

《답변》

상장특례를 위한 기술평가는 규정상 2개의 평가기관에 신청하여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Q10	은행으로부터 기술금융대출을 위해 TCB 기술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평가등급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해도 되나요?
-----	--

《답변》

상장특례를 위한 기술평가는 은행여신용 기술평가와 별도로 설계된 기술평가시스템으로 평가절차, 평가방법, 평가기간 및 비용, 평가등급체계 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은행여신용 기술평가 결과는 상장특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11	기술특례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려면 평가등급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	---

《답변》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가 한군데는 A등급 이상, 그리고 다른 한군데는 BBB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A등급 & BB등급' 또는 'BBB등급 & BBB등급'을 받았을 경우는 상장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12	기술평가를 받아서 통과한 기업은 언제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해야되나요?
-----	--

《답변》

기술평가 결과가 나온 후 6개월 이내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Q13 금번 제도 개편 전 이미 기술평가를 통과했는데 기술특례 심사청구 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의 전문평가기관에서 받은 평가결과도 평가결과를 받은 시점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Q14 기술평가에 탈락 후 다시 기술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규정상 6개월내 재평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기술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만 평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15 기술평가기관이 TCB로 바뀌면서 평가기간과 수수료가 줄어들었는데 평가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답변》

TCB는 기술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존 은행여신용과는 별도로 상장특례를 위한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 구축, 다수의 전문평가인력 보유, 기술정보 DB 활용 등으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평가가 가능하므로, 평가기간 및 수수료는 인하되지만 평가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16 기술평가제도가 전면 개편되면 기술기업 상장활성화에 도움되나요?

《답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평가 수수료인하 및 소요기간단축 등 기술특례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상장비용부담이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TCB 기술평가(여신용) 결과 우수등급의 기술기업*들이 매우 많으므로 동 TCB Pool을 활용할 경우 주관사들이 보다 수월하게 특례상장이 가능한 유망기술기업을 신규 발굴함으로써 기술기업 상장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4. 7월~'15. 2월 기간 TCB평가기업 중 기술우수등급 기업은 약 400여사(추정)

